「2024년 남양주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모집공고

남양주시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남양주시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4년 남양주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남양주시 수출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6월 10일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I 사업개요

O 사 업 명 : 2024년 남양주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O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지원방식: 기업에서 先 수행, 後 신청 및 지원(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 이지비즈(www.egbiz.or.kr) 온라인 접수일시 기준

Ⅱ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남양주시 소재 제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지식기반산업 영위 기업
 - 제조업(수입·유통업 불가)
 - · 남양주시 공장등록을 완료한 기업(휴·폐업 불가)
 - ·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중 건축물 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용도가 공장·제조시설·지식산업센터인 남양주시 소재기업(위반건축물 불가) * OEM 기업의 경우 자사브랜드(상표권) 보유 시 가능(증빙서류 제출 必)
 - 정보통신산업 및 지식기반산업(*붙임의 표준산업분류 확인)

O 지원내용

구분	① 국제특송 샘플발송비 지원	② 정식수출 물류비 지원
지원내용	 특송업체 이용 해외 샘플발송비 지원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인증기관, 시험분석기관 샘플 포함) ※ 2024년 발송분 限 	- 2024년 수출신고 된 건에 대한 국내외 운임(할증료 등 포함) - 수출면장 발급비 등 운송비에 필수적 으로 수반되는 제비용 포함 ※ 운송비 견적서 내 항목 지원
지원비율	- 총 소요비용의 80% 이내(부가세 제외) ※ 단, 관세 및 부가세, 창고보관비는 지원 불가	
지원한도	- 기업당 연간 최대 300만원 限	
지원신청	- 기업당 2분야(샘플발송비, 정식수출 물류비) 모두 신청 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6. 10.(월) 10:00 ~ 6. 21.(금) 18:00

※ 모집기업 미달 시 1주일 단위 연장

○ 신청방법 : 이지비즈(www.egbiz.or.kr) 온라인 접수

① 기업회원 로그인(회원가입): 이지비즈(www.egbiz.or.kr)

② 문서등록 : ^①마이페이지 클릭 □ ^②나의 서류함 클릭 □ ^③지원사업에 필요한 제출서류 (증빙서류·인증서 등) 확인 후 '문서등록하기' 클릭 □ ^④파일 업로드

※ 구비서류 등록 시, 향후 他지원사업에도 지속 이용가능

③ 사업신청 : ^① '이지비즈' 초기화면 검색창 □ ^②사업명 "2024년 남양주시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검색 또는 선택 □ ^③지원사업 신청 하기 □ ^④신청서 작성 □ ^⑤구비서류 업로드 □ ^⑥접수 완료

④ 신청확인 : 마이페이지 ⇨ 나의 참여사업 ⇨ 신청현황 확인

O 제출서류

Ш

구분	샘플배송비 지원	정식 수출 물류비 지원	
	1.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동의서[서식2], 협약서[서식3], 법위반확약서[서식4], 설문서[서식5		
	※ [서식 1,2,3,4,5] 작성 및 날인(또는 서명) 후 스캔본(PDF) 첨부		
	2. 발송내역[서식6] ※ [서식 6] 발송내역 작성 후 엑셀 파일 첨부 3.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 이내 발급 / 홈텍스)		
	4. 공장등록증명 또는 건축물대장(3개월 이내 발급 / 정보통신산업 및 지식기반산업 영위 기업 제외)		
필수	5. 국세 완납 증명서(유효기간 확인 필수)		
	6. 지방세 완납 증명서(유효기간 확인 필수)		
	7. 2023년도 수출실적증명서(1년분,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정보포털 발급) 8. 기업통장사본(기업명의) 9. 운송비 증빙서류(물류사 인보이스,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카드영수증 제출/ 카드사본 필수))		
	10. 바이어 또는 해외인증기관의 샘플요청을	10. 수출신고필증(세관 날인 必)	
해당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1.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 관련 이메일, 인증시험 접수증 등	(Air Waybill)	

선정 및 지원

IV

○ 선정방법 : 신청기업의 지원자격 적격여부 검토를 통해 선정 및 지원결정 ※ 선정여부는 제출한 이메일로 개별 통보

- **지원금 지급** : 지원결정 후 모집 익월 일괄 지급
 - ※ 지원금은 백원 단위 절사하여 지급 (예, 965,540원 → 965,000원)
 - ※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국가간 운송료
 - ※ 무상거래에 소요된 물류비(샘플 제외)
 - ※ 관세 및 부가세, 창고보관비
 - ※ 농수산물 수출물류비(WTO 협정 의거 지원 불가)

O 지원제외 대상

- 타 지자체 및 정부기관으로 부터 동일한 수출 건에 대해 물류비를 지원 받은 경우
-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된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V 문의처

○ 사업담당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북부권역센터 서일교 과장

- (연락처) TEL. 031-850-7123 / E-mail. seo33301@gbsa.or.kr

VI 기타 유의사항

O 유의사항 안내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과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④ 경기도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O 클린민원신고 안내문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담당자가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접수 불가나 반려 처리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할 때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 신고창구 : 031-259-6251
- GBSA 홈페이지(www.gbsa.or.kr) → 클린센터 신고하기

VII 참고사항

-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방법 (※조회기간 : 2023. 01 ~ 12)
 -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 http://www.trass.or.kr 방문(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정보' 또는 상단 메뉴의 '자사실적정보' 클릭
 -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